

## 적립금 운용 · 관리규정

제정 2008. 7.20.  
 개정 2010. 5. 1.  
 개정 2012. 3. 1.  
 개정 2014.11. 3.  
 개정 2017. 3. 1.  
 개정 2018. 3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이라 한다) 적립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·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조의 2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의적립금”이라 함은 적립목적을 정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사용하는 적립금을 말한다.
2. “원금보존적립금”이라 함은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금운영수익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경우를 말한다.

**제2조(적립금조성)** ①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, 그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 · 건축적립금 · 장학적립금 · 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, 적립금 사용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또한 등록금회계로부터 비등록금회계로의 적립금 적립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내에서 건축적립금으로만 적립할 수 있다.

**제2조의 2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,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본 위원회는 교육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무관련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, 회계팀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.

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(위촉)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적립금 투자지침서 입안
2. 적립금 운용전략(실행)의 수립
3. 기타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3조(적립금의 운용·관리)** ①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적립금의 안정성, 유동성, 수익성에 기반한 기금운용을 위해 적립금 투자지침서를 작성한다. 적립금 투자지침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위험관련 상품 투자 시 투자리스크를 감안하여 외부 전문운용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.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

**제3조의 2(적립금의 투자대상)**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대상 종목 주식 등 위험자산을 제외하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 채권 등에 대하여 투자하며, 투자가능자산은 다음과 같다.

① 주식: 증권거래소 상장주식

② 주식관련 증권

③ 채권: 회사채, 금융채, 국공채 등 확정금리부 유가증권, 단, 신용등급은 채권A-, 기업어음 A3 이상

④ 간접투자증권(해외에서 설정된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.)

⑤ 유동성자산: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

**제4조(적립금의 사용 등)** ①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하되,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관리부서)** ①적립금운용·관리 관리부서는 교육지원처로 하며, 소속직원 중 기금출납 직원을 따로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·관리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임)**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8. 7. 20.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0. 5. 1.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. 3. 1.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. 11. 3.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. 3. 1.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. 3. 1.부터 시행한다.